

미국판례에 나타난 성폭행피해자의 신원공개문제

애런트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1991년 봄·여름호)에 실린 Morgan David Arant, J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의 「Press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Sexual Assault: Weighing Privacy and Constitutional Concerns」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법원이나 경찰의 문서에 피해자의 신원을 공공 연하게 기록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쟁은 1989년에 재론되었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이 Florida Star v. B. J. F 사건에 대한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제기되었다. 플로리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함으로써 제기된 위 소송사건에서 Florida Star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파기판결에 대해 Des Moines Register의 Geneva Overholster는 동 신문의 사설에서 「근대 언론의 극히 드문 결박을 통해서, 언론은 성폭행 당한 여인에게 극히 불공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치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Overholster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표하여 사회로 하여금 그 고통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라 Nancy Ziegenmeyer는 그녀가 성폭행 당한 사실과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5회에 걸쳐 Des Moines Register에 게재했다. 많은 사람들은 법원과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강간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의 이익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정보접근권과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할 권리 등에 훨씬 우선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특정 피해자의 신원 공표에 관해 일반 공중은 수정헌법 제 1 조와 관련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신원공개가 금지됨으로써 상당한 사생활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폭행 피해자가 느끼는 사회적인 치욕은 다른 범죄사건피해자들이 느끼는 치욕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 1 조는 성폭행 피해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Florida Star v. B. J. F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 보다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규정된 언론의 권리에 더 비중을 두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이전의 다른 판례에서 보여왔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주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던 주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다.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사건과 같이, Florida Star 사건도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 권리보다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판례이다. Florida Star 사건 판결에서 Thurgood Marshall 판사는 언론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취재하여 공표하였을 경우, 언론은 어떤 상황에서 공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만약 경찰기록으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가 아니라, 언론의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다면, 연방대법원은 Florida Star 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지지하였겠는가? 둘째, 언론의 신원공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재판, 보도금지, 공문서상의 신원조항의 삭제 등과 같은 법률적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제기될 헌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글은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그들의 신원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Florida Star 사건과 같이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주형법에 근거하여, 원고인 피해자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사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형법조항이 없는 경우, 언론을 상대로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공공이나 언론에 공표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언론에 신원이 공표된 성폭행 피해자는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으려 한다. 몇몇 사건의 경우, 원고는 성폭행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주형법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이 법률에 대한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플로리다, 조지아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3개주의 법률이 모두 성폭행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언론에 대해형사상의 벌금이나 금고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3개주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발행인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사생활권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1963년 Nappier v. Jefferson Standard Life Insurance Co. 사건에서 연방 제 4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성폭행피해자의 신원이 공공의 관심사 및 공적 기록일지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률에 따라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법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결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률은 특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관심 문제인 범죄에 관한 보도는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대상에서 제외 된다. Nappier 사건에서 TV 방송국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보건성에 근무하는 두 여직원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직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두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된 것으로 판결했다. 두 명의 피해자는 「Little Jack Girls」로 알려진 여인들로 「little Jack」이라는 보건위생에 관한 인형극을 순회공연하고 있었다. TV 뉴스는 그들의 차에 새겨진 「Little Jack, 5.C. State Department of Health」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법원은 그것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되었다고 인정했다. Jefferson Standard 사는 문제의 성폭행 사건이 공공의 관심사항이므로 그 보도는 사생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뉴스가치에 상관없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률은 신문이나 방송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사생활 침해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언론사측은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문제삼지 않았으며,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10년 후 연방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진실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 법률에 근거하여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합헌성여부를 판단했다.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당국이 공문서에서 입수한 특정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사실적으로 공표했다

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공에 공개된 공개재판의 기록에서 입수한 진실한 정보를 공표하였을 경우, 언론은 그 공표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기자는 법원공무원이 그에게 건네준 기소장 사본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도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이라고 판시했다. 「죄를 범하고 그 결과 기소되고 기소에 따라 재판이 열리는 과정은 말할 필요없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며 이러한 당국의 활동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영역에 속한다」. Byron White 판사는 이번의 판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공공기록에 기재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시민의 사생활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주법률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만약 재판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이익이 있다면, 국가는 공문서나 개인적인 정보의 또 다른 노출을 방지하는 수단을 써서 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White 판사는 문제의 정보가 공공문서에 기재되면, 사생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Cox 사건을 제한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했을 뿐, 좀더 큰 문제인 진실한 정보를 공표하였을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 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항상 물을 수 있는가, 또는 언론이 임의로 공개한 것으로부터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 범위를 정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1978 년 Landmark Communications, Int. v. Virgini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판사의 비행에 대해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법적 검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법률에 의해 특정한 신문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고도의 신중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법적절차가 사전에 공개됨으로써 야기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Virginia Pilot 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는 필수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형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버지니아개의 이익은 표현의 자유와 그로부터 연유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침해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며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 보냈다. 연방대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적절차를 공개한 위원회위원을 처벌하고자 하는 버지니아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 판결은 언론을 포함하여, 문제의 심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삼자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폭로하고 보도했을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는 제삼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한정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가 폭로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은 언론에의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내부적인 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Land mark 판결이 있는 지 1 년 후, 연방대법원은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공표했다 하여 제기된 Smith v. Daily Mail 사건을 심리했다. Warren Burger 주심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의 주목할만한 주 정부의 이익기준, 즉 「만약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한 특정신문에 대해 주 정부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주 당국은 그 정보를 공표한 언론을 처벌 할 수 없다」 는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찰스톤의 Daily Mail 과 Gazette 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미성년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하여, 그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률을 위반했다. 기자는 피의자 신원을 일상적인 뉴스취재 과정을 통해 알았다. 연방대법원은 미성년피의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 정부의 이익은- 사회복귀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언론에 대해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거나, 수정헌법 제 1 조 및 제 14 조의 보호규정을 능가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결했다. Burger 판사는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을 재재하려는 주 당국의 행위는 결코 헌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 이익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충분히 더 가치가 있다 해도,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률은 인쇄 매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방송매체에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원은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공표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Cox 사건과 Daily Mail 사건의 중요한 차이는 Daily Mail 사건의 경우, 기자가 합법적인 공공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뉴스취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알았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자유언론은 당국이 다른 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실시했다. Cox 사건이 있던 지 15년 후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률에 근거하여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제기한 Florida Star v. B · J · F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공공문서에서 입수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 정부의 이익보다는 그 법률의 합헌성에 관심을 두었다. Florida Star의 견습기자는 경찰서 기자실에 있는 사건보고서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이 게재된 기록을 복사하여 다른 기자에게 제공했다. 그 기자는 신문사 내규를 무시하고 「경찰란」에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된 기사를 한 페이지에 걸쳐 게재했다. 피해자인 B · J · F는 Duval 군 순회병원에 언론에 피해자의 이름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위반한 경찰과, 성폭행피해자의 신원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Florida Sta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2,500 달러에 합의했다. Florida Star는 문제의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판사는 Florida Star가 고의적으로 그 법률을 위반했다며 B · J · F에게 직접판결(direct verdict)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배심은 원고에게 75,000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5,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플로리다주 항소심은 이 판결을 확정했고 주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미연방대법원의 Marshall 판사는 원심을 파기했으나, 진실한 정보의 공표는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 1 조와 사생활 권리간의 불일치에서 제기되는 이익들은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Florida Star 사건의 적절한 전후 관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제한된 원리에 근거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Marshall 판사는 Florida Star 사건과 Cox 사건은 사실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Cox 사건은 이번 판결에서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Cox 사건에서 기자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고, 법원은 법원기록에 피해자의 신원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만 판결을 내렸으며, Cox Broadcasting Corp. 에 부과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관심사인 재판에 있어서의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Florida Star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법원문서가 아니라 경찰기록에서 취재하였다. 당시 가해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어떤 재판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 판사는 Smith v. Daily Mail 사건에서 제기된 주목할 만한 주정부의 이익기준, 즉 만약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진실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재하였다면, 주 당국은 주차원에서의 이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없이는, 문제의 신문사를 합헌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Florida Star 사건을 판결했다. Florida Star 사건에서 Marshall 판사는 Florida Star는 취재기자실에 놓여 있는 사건기록에서 합법적으로 문제의 정보를 취재하였고, 뉴스기사는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난폭한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경찰조사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의 공공문서에 관한 법률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연방대법원은 언론이 공직자가 실수로 공개한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보았다. 플로리다주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금지한 주 법률이 ①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② 피해자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며 ③ 피해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없이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arshall 판사는 이러한 이익을 위해 Florida Star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왜 너무 성급한 수단인가를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주 당국은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을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공문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이 기재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 주 당국이 그 정보를 공표한 언론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억지 수단에 불과하다. 둘째,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주의를 인정한 주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한 경우 사실 모든 사건에 있어 서 공표에는 책임이 자동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불법행위인 통상적인 사생활침해의 성립요건은, 특정인의 사생활적 사실의 공개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불쾌한 느낌을 갖도록 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생활침해의 인정 여부는 특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Florida Star 사건에서 주법원은 주형법을 위반한 공표에는 자동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언론사의 부주의를 인정했다. 자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한 주법원의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호하고자 한 언론에 의한 진실한 사실의 공표에 대해 덜 보호한 것이 된다. 마치 막으로 플로리다주는 대중매체에 의한 공표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공표를 규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법원의 판결한계를 언급하면서, Marshall 판사는 「우리는 진실한 공표가 자동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거나, 국가가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없다거나, 심지어, 특정한 주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데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Cox, Landmark, Daily Mail, Florida Star 등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피고인 언론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했고, 합법적으로 입수한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을 규제하려는 민형사상의 소송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Nappier 사건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주 정부 직원에 관한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다. Nappier 사건에서는 공공문서로부터의 정보획득이라는 정보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Daily Mail 사건의 판결논리를 적용하면 Nappier 사건 피고인은 아마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진실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언론의 헌법적 권리임을 인정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 공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의 판결인 Florida Sta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다 하여 자동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했다. 즉 주 당국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것에 대해 이를 결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금지가 주 당국의 이익에 속하는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문제는 연방대법 원이 공표가 합헌임을 인정하는 어려운 가정 들에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정부의 이익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러한 주정부의 이익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주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화 사유의 본질과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Smith 사건에서는 주 정부의 이익이 되는 미성년피의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은 주당국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입수한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항이 아닌 사실이 공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경우, 개인은 언론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연방대법원은 합법적으로 공식문서나 일상적인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언론에 대한 패소판결을 지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언론을 처벌할 법률을 갖고 있지 않은 주에서는, 피해자가 관습법상의 사생활 침해와 부주의를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형법이 제정되어 있는 주에서는, 피해자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언론은 성폭행피해자의 신원은 뉴스가치가 있고, 그 정보를 공공문서에서 취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상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가장 적절한 사생활 침해행위는, 개인적으로 난처한 사실을 공공에게 폭로하는 것이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도된 여성들은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소송에서 거의 패소했다. 원고인 피해자는 첫째, 문제의 보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정당한 공공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 1 조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데 실질적인 장애요소가 된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적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한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웠다. Ross v. Midwest Communications Inc. 사건에서 제 5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여인의 성폭행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강간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인 방송사가 유죄가 선고된 강간범이 범인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의 머릿글자와, 강간 장소인 자신의 집을 방영하여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의 다큐멘터리는 특정 사람이 강간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당한 공공의 관심에 속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강간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뉴스가치가 있을지라도 문제의 다큐멘터리는 그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또 강간당한 그녀를 모욕함이 없이 제작될 수도 있었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도된 강간사건의 세세한 사실들에 관해 공공이 갖고 있는 관심이란 강간사건의 사실과 사건관련 당사자간의 연결관계(connection)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진과 이름이 문제 기사의 영향력과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과는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제 10 순회항소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Ross 가 강간당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공 이익의 문제이지, 명확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강간사건이 공공 이익에 관한 문제일지라도 강간당한 여인의 이름이 항상 공공 이익에 속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Hyde v. City of

Columbia 사건은 Florida Star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부주의를 원인으로 한 소송사건이다.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가해자가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성명과 주소를 공표한 경찰과 언론에 부주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80년에 John Hyde는 알지 못하는 남자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후 컬럼비아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녀의 성명, 주소 및 사건기록을 컬럼비아의 Daily Tribune에 넘겨주었고, 동 신문은 이를 기사화했다. 신문을 통해 Hyde의 성명과 주소를 알게 된 가해자는 그녀를 괴롭혔다. Hyde는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경찰의 부주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아직 구속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녀의 신원을 부주의하게 공표한 언론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납치사건의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알아 볼 수 있는 목격자의 성명과 주소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그것의 공표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상당히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문제이며, 뉴스매체는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삼자가 원고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뉴스의 기능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손상될 수도 있는 특정인의 안전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가해자가 체포되기 이전의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경찰문서를 통해 입수했을지라도, 그것은 공식문서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Hyde의 성명은 뉴스가치가 없고, 그녀의 신원공개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피해자신원공표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비교해 볼 때 무의미한 것이라고 판시 함으로써 이 사건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합의, 종결되었다. 강간사건 피해자들은 그들의 신원을 공개한 언론이 아닌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Hyde 사건에서는 경찰당국이 피고였으며, Florida Star 사건의 피고인 보안관서는 법원밖에서 2,500 달러에 합의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특정 병원과 신문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로 원인으로 제기한 소송인 Griffith v. Rancocas Valley Hospital, et al.,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범죄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는 그것이 공공문서와 공개재판과정에서 입수했건 또는 경찰과의 비공식적인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었건간에 문제의 범죄기사와는 적어도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인 Burlington County Times의 약식재판청구를 인정했다. Daily Mail 사건 판례에 따라, 뉴저지주 법원은, 성폭행 당한 여인의 비공개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병원 기록에서 입수한 그녀의 성명과 주소를 언론이 공표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병원 측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병원 측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뉴저지주 공공문서 법은 환자가 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병원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폭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데는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강간범죄와 그 피해자의 신원이 공공문서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가? 위의 소송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성범죄와 그 피해자의 신원이 공공의 관심대상인 경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하기를 꺼려한다. 역시 성범죄는 반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공공은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Cox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수사는 공공 이익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뉴스가 된다고 판시했지만 피해자의 신원이 뉴스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가 그 기사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그 기사는 명확히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공공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는 뉴스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Ross 사건에서 순회항소법원은 성폭행사건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그 사건과, 그에 관련된 특정인이 어떻게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는 별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만약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들의 신원이 뉴스가치가 없고, 그 공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킨다면, 그들의 신원공표는 판례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진실한 정보를 공표한 언론의 헌법적 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언론이 성폭행피해자의 신원을 공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못되었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언론을 상대로 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재판, 보도금지, 정보공개법의 대상에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 기록을 제외하는 등의 사법적 처리 수단을 제시한다. Cox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주당국은 증거서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수단에는 재판의 비공개로 하는 방법이 있다. 비공개 재판은 주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주며, 그들의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목격자로 하여금 강간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많은 주가 법률상 비공개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강간사건 피해자가 증언하는 동안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률은 증언서를 통해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성폭행 피해자가 공개법정에서 범죄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 당국과 피해자의 이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공개 재판이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연방대법원은 1980 년대에 제기된 일련의 소송사건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언론의 접근은 넓게 보아 수정헌법 제 1 조가 규정한 권리임을 인정했다. 주 1 심법원에서 처리중인 강간사건 관련 소송에 접근하려는 한 신문사가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가 관련된 재판의 비공개 결정을 법원에 위임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법률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Glob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for the County of Norfolk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상급법원이 미성년자인 성폭행 피해자가 증언하는 동안 비공개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문제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대변하여 William Brennan 판사는, 연방대법원이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사건에서 실시한 바대로 언론과 공공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접근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비록 헌법이 명백히 재판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은 언론과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형사소송에 대한 언론의 접근은 전체적으로 재판소송과 정과 당국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는 미성년자인 성폭행피해자를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냉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사건별로 비공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매사추세츠주 법률은 모든 소송에서의 비공개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 했다. 헌법이 재판의 공개를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방대법원은 Press-Enterprise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Riverside 사건에서 비공개를 인정한 항소법원의 결정과, 기록사본의 제공을 거절한 1심법원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명백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Press Enterprise v. Superior Court(Press-Enterprise H)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7:2의 다수결로 언론과 공공이 형사소송의 예심과정을 방청할 수 있는 제한된 수정헌법 제 1 조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 했다. 주심인 Burger 판사는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재판의 공개로 인해 침해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② 비공개 진행 외의 합리적 대안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할 경우 예심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단순한 위험은 비공개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리고 심지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명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Press Enterprisell 사건에서처럼 41 일간의 예심과정 전체 기간을 비공개로 해서는 안된다.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면 비공개재판은 성폭행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합헌적인 방법이 된다. 연방대법원은 재판의 비공개가 정신적 손상으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주 당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은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비공개재판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과 언론의 재판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에 있다기 보다는 수정헌법 제 6 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다. 피고인은 비공개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 당국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연방대법원은 절도사건 피고인이 그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한 미성년 피의자의 비공개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Davis v. Alask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6 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는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 당국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Wailer V. Georgi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6 조에 명백히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함축적으로 규정된 언론과 공공의 권리만큼 공개재판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어떤 주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을 비공개로 진행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주당국의 이익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United States exrel. Latimore v. Sielaff 사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이 있기 전에 방청인의 퇴장을 명한 판사의 결정이 자신들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번복을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1심판사의 행위는 정당하고 적절했으며 공개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증언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재판과정 내내 공공의 방청을 금지한 것보다는 수정헌법 제 6 조의 권리를 덜 침해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비공개에 대한 판결은, 형사소송이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들이다. 공개재판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과 수정헌법 제 1 조의 언론의 권리 및 수정헌법 제 6 조의 피고인의 권리를 신중히 고려하면,

다른 대안적인 수단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정부 당국의 이익이 없이는 비공개재판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폭행 피해자는 비공개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만약 그녀가 당국에서 그녀의 폭행사건을 기소해주기를 원한다면, 공공과 피고인을 법정에서 대면해야만 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법정에서 또는 비공개재판의 기록사본을 통해서 공개되면, 언론은 그 정보를 공개할 자유를 갖게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소송관련 피해자의 신원보도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금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1 심법원이 침해가 되는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명령을 내렸던 것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Sheppard v. Maxw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침해가 되는 문제들을 폭로한 변호사, 소송 상대방, 법원 관리 등에게 재판정 밖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1 심법원의 결정은 당연했다고 판시했다. 어쨌든 연방대법원이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데 비해 하급법원들은 사건에 따라 보도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보도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언론에 대해 보도금지를 요구한 소송에서처럼, 재판 참석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전억제의 정당성은 수정헌법 제 6 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교량하여 평가된다.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전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법적인 문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과, 법원기록이나 소송기록에 가명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판사는 피고인측 변호인을 포함하여 경사나 법원관리에게 기자들 앞에서는 피해자의 성명을 거명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B · J · F가 제기한 소송에서, 플로리다주 항소법원은 그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 심에서와는 달리 이름의 머릿글자만을 사용했다. Hyde 사건에서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가해자가 체포되기전에는 정보공개법 하에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는 공식 정보가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판례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 필자는 어떤 주의회는 성폭행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게재된 경찰기록부분을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이 아닌 성폭행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과 법원관리들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보호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방법하에서 신원공개에 대한 잠재적인 민사상의 책임은 이들이 지게 된다. B J F나 Hyde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고인이었다. 좀더 많은 주에서 공공문서에 성폭행피해자의 신원을 게재하지 않게 된다면, 고의적인 혹은 부주의한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경찰에 공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경찰출입기자과 경찰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자에게 범죄기록을 제공한 경찰은 소송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경찰기록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들은 법정에서 헌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으며, 결국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표를 금지한 주형법은 강력히 주장되지 못했으며, 사생활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이 형법규정을 제시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Cox

사건과 Florida Sta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것일지라도 합법적으로 입수한 진실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합법적 권리라고 판시했다. 또 비록 어떤 상황하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 당국의 이익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규정된 언론의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공개로 사생활적 사실의 공표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 기재를 금지한 공공문서에 관한 법률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보호에 관한 책임을 공무원이 지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성명이 부주의로 인해 공표되었을 때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찰기록을 언론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공무원이 탄생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범죄의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이 보도금지와 비공개재판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그러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들이 헌법적이고 실제적인 장애에 직면하기 때문에 보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책에 관한 문제로 언론사측이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언론사는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위험이 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강간사건 보도에 관해 좀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윤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앞으로 좀더 논의 되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다른 폭력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과 같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해야 하는가? (2) Des Moines Resister 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 피해자가 그의 신원공표를 허락했을 때에만 그의 신원을 공표해야 하는가? (3) 고발인의 신원을 공표하지 않는 언론의 관행이 언론에서 항상 신원이 공표되는 강간사건의 피고인들에게도 공정한가?